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9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년 10월 22일)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DI527)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채권**에 투자하며 일부 **주식,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퇴직부채 관리와 퇴직부채 사외예치금 자산성장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의 퇴직부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부채연계포트폴리오와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용전략 상 모펀드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0.639	0.3	-	0.879	90	184	283	494	10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0.489	0.15	-	0.729	74	153	235	410	91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1.10.01~ 26.09.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1.06.14	12.26	11.22	11.28	5.04	4.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21.06.21	12.09	11.06	11.11	4.88	4.5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투자신탁	2021.05.17	12.80	11.76	11.81	5.54	5.39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9.59	7.24	6.36	5.85	5.69

(주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여러 모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모승규	1988	팀장	1개	312억원	-	-	1.38	6.21	1년8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

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채연계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DB 기업들의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로 전략적인 분산투자를 실시합니다. 부채연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퇴직부채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나 퇴직부채 변동을 모두 헤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부채 증가,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의 자본손실에 대한 방어등을 위하여 국내외 주식, 채권등을 통하여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익추구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표준형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당사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고용시장, 산업구조, 금융시장상황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수익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운용하여 표준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고유의 퇴직연금 부채에 대한 요구 및 상황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의 부채상황에 따라 적합한 운용전략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한 투자전략 중 하나는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부채를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퇴직부채에 연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퇴직부채에 연계하여 투자하더라도 나. 특수위험/표준형관련 위험, 퇴직연금부채연계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DB제도에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 수령액과 이 투자신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투자성과와 매우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의 투자전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매입방법</td><td>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td><td rowspan="2">환매방법</td><td rowspan="2">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C-P2, C-P2e, C-P2I, F]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계좌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td></tr>
<tr><td>모집기간</td><td>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0월 29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14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기타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DI527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I528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I529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I530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DI53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DI527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I528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I529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I530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DI53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21.05.1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021.05.17	최초 설정
2021.12.16	모투자신탁 명칭변경(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2.05.31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3.10.18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6.28	위험등급 변경[3등급(다소 높은 위험))→5등급(낮은 위험)]
2026.03.12	운용역 변경(이원준→모승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모승규	1988	팀장	1년8개월	(15년~16년) 한국소시에테제네랄은행 (16년~18년) 율러허미스코리아 (18년~20년) CrossBorder Investment Management LLC (21년~25년) 신한투자증권

				(2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모승규	1개	312억원	-	-	1.38	6.21	1개	312억원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서	15개	23,762억원	-1.94	0.73	-3.05	-0.33	-	-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서	15개	23,762억원	-1.94	0.73	-3.05	-0.33	-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진하	1974	본부장	26년9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진하	9개	27,688억원	0.14	2.42	0.14	2.42	-	-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서	15개	23,762억원	-1.94	0.73	-3.05	-0.33	-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성수	1983	본부장	8년3개월	(04년~06년) EON Group/Consultant (08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국제본부 국제마케팅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2본부 리스크관리팀 (12년~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18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부동산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성수	1개	3,249억원	0.15	-0.16	1.73	2.56	-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진하	1974	본부장	26년9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유의형	1984	본부장	10년3개월	(10년~14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4년~16년)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진하	9개	27,688억원	11.21	16.05	1.91	8.30	-	-
유의형	10개	9,441억원	11.21	16.05			-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윤정	1974	팀장	15년6개월	(99년~03년) NH투자증권 리서치팀 (03년~07년) 동부증권 리서치팀 (07년~11년)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 (11년~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윤정	13개	10,463억원	17.71	18.01	12.15	13.80	-	-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윤정	1974	팀장	15년6개월	(99년~03년) NH투자증권 리서치팀 (03년~07년) 동부증권 리서치팀 (07년~11년)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 (11년~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윤정	13개	10,463억원	106.94	69.26	53.81	50.47	-	-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재현	1985	본부장	15년10개월	(1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현	2개	1,188억원	108.02	69.14	66.58	45.65	-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4년0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김진하	1974	본부장	26년9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4,780억원	2.77	3.62	1.38	6.21	-	-
김진하	9개	27,688억원	2.77	3.62			-	-
고영서	15개	23,762억원	2.77	3.62			-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신광호	1983	본부장	7년3개월	(09년~10년)삼성생명/법인지원팀 법인상품P (10년~19년)윌리스타워스왓슨코리아투자자문/Investment Consulting (19년~현재)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광호	4개	212억원	5.61	4.58	12.15	13.80	-	-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최진영	1976	본부장	21년8개월	(02년~05년) 하나은행 기업신용조사 및 심사 (0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박현수	1990	팀장	10년9개월	(16년~17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17년~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리서치팀 (18년~20년) 하나UBS자산운용 리서치팀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진영	18개	92,839억원	25.04	19.94	66.58	45.65	-	-
박현수	6개	3,905억원	25.04	19.94			2개	266억원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박경륜	1977	본부장	17년5개월	(04년~09년) 골드만삭스증권 리서치 (09년~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부문 (17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경륜	9개	5,498억원	8.04	11.71	9.95	18.12	-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명준	1984	본부장	17년10개월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부동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명준	23개	17,247억원	2.28	3.28	2.28	3.28	-	-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용하	1992	매니저	6년9개월	(20년~22년) 삼성생명 유가증권운용부 (22년~2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하	2개	2,215억원	106.94	69.26	53.81	50.47	-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용하	1992	매니저	6년9개월	(20년~22년) 삼성생명 유가증권운용부 (22년~2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하	2개	2,215억원	29.96	25.34	12.15	13.80	-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민경현	1992	매니저	0년3개월	(21년~22년) SK증권 Coverage본부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종모	1998	매니저	0년0개월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경현	1개	126억원	5.61	4.58	12.15	13.80	-	-
이종모	-	-	-	-			-	-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민태	1991	선임매니저	2년9개월	(17년~20년) 디앤에이치투자자문 (20년~21년) 노무라증권 (21년~21년) StartSeed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민태	4개	3,291억원	5.52	12.17	9.95	18.12	1개	35억원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슬	1985	팀장	4년10개월	(1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슬	7개	2,060억원	101.43	66.20	66.58	45.65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1.05.17 ~ 2026.03.11	이원준
2026.03.12 ~ 현재	모승규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8.02.29 ~ 2009.07.29	유승창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9.07.30 ~ 2010.02.10	손동식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02.11 ~ 2010.08.05	박주평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08.06 ~ 2011.12.27	김성우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1.12.28 ~ 2013.04.11	김흥직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3.04.12 ~ 2016.04.04	박택영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4.05 ~ 2017.03.09	박경륜(책임), 김재현(부책임)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7.03.10 ~ 2023.07.27	구용덕(책임), 김재현(부책임)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3.07.28 ~ 2025.03.13	김재현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03.14 ~ 현재	김재현(책임), 이슬(부책임)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6 ~ 2010.05.16	서재춘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05.17 ~ 2013.06.13	한상경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3.06.14 ~ 2024.12.17	서재춘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4.12.18 ~ 현재	고영서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7.08.09 ~ 2024.12.17	서재춘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4.12.18 ~ 현재	고영서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4.10.24 ~ 2018.06.14	김주형, 서재춘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8.06.15 ~ 2019.07.23	박헌석, 서재춘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9.07.24 ~ 2020.05.19	서재춘, 홍성범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0.05.20 ~ 2022.06.29	서재춘(책임), 홍성범(책임), 최주훈(부책임)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6.30 ~ 2024.07.09	서재춘(책임), 최주훈(책임), 홍성범(부책임)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7.10 ~ 2025.12.22	서재춘, 최주훈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2.23 ~ 현재	박현수, 최진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09.03.02 ~ 2009.11.04	이헌복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09.11.05 ~ 2010.02.15	박진호, 이헌복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0.02.16 ~ 2011.04.18	목대균, 박진호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04.19 ~ 2011.08.30	박진호,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08.31 ~ 2011.11.10	김진하, 박진호, 안선영, 한상경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11.11 ~ 2013.06.13	구용덕, 김진하, 안선영, 한상경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3.06.14 ~ 2014.05.18	구용덕, 김진하,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4.05.19 ~ 2014.12.29	구용덕, 김진하, 목대균,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4.12.30 ~ 2016.10.31	김진하, 목대균,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6.11.01 ~ 2020.07.29	김진하, 목대균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0.07.30 ~ 2020.10.29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0.10.30 ~ 현재	김진하, 유의형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1.05 ~ 2012.06.19	김진하, 장원영,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6.20 ~ 2015.06.21	김진하, 박건형,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5.06.22 ~ 2016.01.28	김진하, 이헌복,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01.29 ~ 2016.12.01	김진하, 홍사욱, 황영진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12.02 ~ 2022.02.09	김진하, 이현경,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02.10 ~ 현재	고영서, 김진하, 이현경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6.09.09 ~ 2021.01.27	김형우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1.01.28 ~ 2023.04.13	김형우(책임), 김윤정(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3.04.14 ~ 2026.07.29	김윤정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6.07.30 ~ 현재	김윤정(책임), 김용하(부책임)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6.09.23 ~ 2023.04.13	김형우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3.04.14 ~ 2025.10.23	김윤정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5.10.24 ~ 현재	김윤정(책임), 김용하(부책임)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17.08.11 ~ 2018.07.26	이상훈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18.07.27 ~ 현재	김성수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1.06.01 ~ 2025.01.23	신광호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1.24 ~ 2026.07.29	신광호(책임), 김승범(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07.30 ~ 2026.10.28	신광호(책임), 김승범(부책임), 민경현(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10.29 ~ 현재	신광호(책임), 민경현(부책임), 이종모(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8.01 ~ 2024.02.21	박경륜(책임), 주종륜(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2.22 ~ 2026.03.11	주종륜(책임), 김민태(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3.12 ~ 현재	박경륜(책임), 김민태(부책임)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2.05.13 ~ 2026.07.29	서재춘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6.07.30 ~ 현재	고영서

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허준혁	과거경력 : 한국채권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채권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Ryan Coyle	과거경력 : Senior Research Analyst (Consumer), Caerus Global Investors Senior Associate Analyst (Consumer, Retail, Services), Stadia Capital Financial Analyst, Bank of America Securities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Equity Investment Unit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개인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팀에 관한 사항 - 운용조직 명 : Equity Investment Unit - 운용조직 역할 : Equity Investment Unit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을 포함하여 50% 이상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을 포함하여 50% 이상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상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상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 이하(단,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이하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이하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 이하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50%이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021.06.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021.06.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2021.1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5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2021.05.17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구분	지급비율(연 %)						
	수수료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3	0.3	0.024	0.015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0.3	0.15	0.024	0.015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	-	-	0.3	0.1	0.024	0.015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	-	0.3	-	0.024	0.01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1~4항을 포함하여 5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단기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2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1~4항을 포함하여 5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1~4항을 포함하여 50% 이상	이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1~4항을 포함하여 5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5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 이하(단,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6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100% 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9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며, 일부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1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13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4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5~14항을 포함하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5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6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14) 및 (15)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14) 및 (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 (1) ~ (14)에의 투자비율은 (16)의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퇴직부채 관리와 퇴직부채 사외예치금 자산성장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의 퇴직부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부채연계포트폴리오와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용전략 상 모펀드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투자전략]
1. 퇴직부채 관리: 퇴직 부채와 연계하여 운용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의 퇴직부채는 다양한 요인(임금상승률, 할인율, 근속연수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퇴직부채 변동 요인 중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퇴직부채는 일반적으로 증가
 -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다양한 퇴직부채 변수를 고려하여 운용될 계획입니다. 퇴직부채 변수를 고려하여 운용하는 방법의 예시로 금리가 하락하여 퇴직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채권관련 모투자신탁에 대한 편입비 조절을 통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채연계 포트폴리오: 퇴직부채의 변동에 연계되는 포트폴리오로 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모펀드로 구성됩니다.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모펀드 이외에 다른 모펀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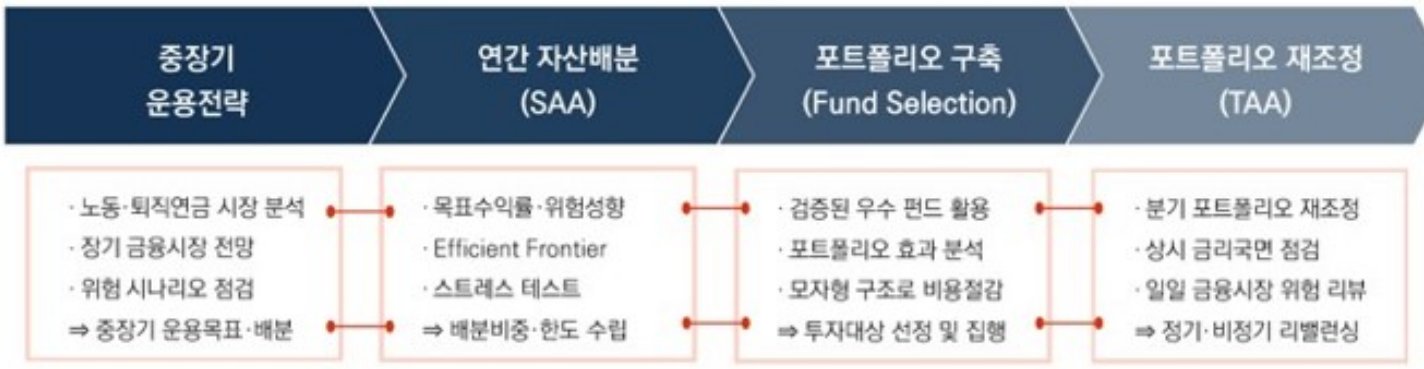
2. 사외예치금 자산성장의 균형적인 관점: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와 함께 펀드 수익률의 제고(사외예치금의 자산성장)를 위해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병행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제고하고 금리 상승시 국내 채권으로 구성된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하락 위험을 일정부분 제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펀드로 구성됩니다.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펀드 이외에 다른 모펀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모펀드 현황]

모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부채연계포트폴리오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부채연계포트폴리오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부채연계포트폴리오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부채연계포트폴리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추구포트폴리오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수익추구포트폴리오

상기 모펀드는 운용전략상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시 수시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운용프로세스



1) 중장기 운용전략 수립
- 고용시장, 금융시장, 산업구조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펀드의 중장기 목표수익률등 결정
- 매년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와 중장기 금융시장 환경을 토대로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 전략 수립

2) 연간자산배분
- 국내외 금리 국면 분석, 연간 금융시장 전망, 위험요인 점검등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 수행

3) 포트폴리오 구축
- 수립된 전략적 자산배분 결과에 따른 모펀드별 편입비 결정 및 집행

4) 포트폴리오 재조정
- 분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수행하나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수시 재조정 실시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 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40% 이하로 투자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여러 모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편입하고 있는 투자신탁 재산의 수정듀레이션을 1.5년 이내로 하여 채권에 투자합니다. ③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3M~3Y)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1년이상)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기회 발생 시 일부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

	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ustomized KIS 중기 채권지수 (3M~5Y) * 95% + CD금리 * 5%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KOSPI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20% 이내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일부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전략을 구사합니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합니다. ④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도 일부 투자하여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신탁재산의 최대 100% 까지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의 자산 배율 비율은 0 ~ 100%까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으로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해외법인의 CIO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를 통한 Top Down Approach에 의해, 자산 및 국가에 대해 적극적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월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산배분회의와 글로벌 퀀트- 베이스 회의를 통하여, 미래에셋 국내외 운용사의 Analyst / Portfolio manager 들의 지역별 / 섹터별 / 자산별 View 를 공유하고 잠정적인 투자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 Experience-based 리서치를 통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합니다. - 안정적인 우량자산에의 장기투자와 수익률 추구방식의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인사이트펀드만의 독자적인 자산 배분 투자전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50%이상 투자하면서, 해외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단,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투자합니다. ②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요인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

	상 투자합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비교지수: KOSPI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에 40%이하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투자부분에 대하여 주로 활용할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을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④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IS국고채1~2년×70% + KOSPI×30%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퀄리티(Quality)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다.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	0.1	5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대만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611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35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32.0
	6.6	2.5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351.0
주요산업	전자기술, 정보통신, 석유정제, 화학, 섬유공업, 철강, 기계, 시멘트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93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675.0
	3	0.7	1.3	수입 (2024 년 , 십억 US$)	582.0
주요산업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싱가포르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547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0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78.0
	4.1	1.8	4.4	수입 (2024 년 , 십억 US$)	786.0

주요산업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13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5,20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35.0
	2.6	1.4	2	수입 (2024 년 , 십억 US$)	758.0
주요산업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등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츠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투자대상 재간접형 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산배분형투자위험	국내 또는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투자증권, 상품(Commodity)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각종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투자위험(자금송환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집중투자에 따른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서는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보접근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투자지역, 자산속성(사무실, 호텔, 개발사업 등), 임대차 계약 등 계약조건의 안정성, 자산 매각 리스크, 목표수익률 및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가치변동이 크지 않고 분배(배당)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 당사의 운용, 리스크관리, 법무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만기까지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기상환(Prepayment)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래 예시와 같이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 예시: 수의상환사채(Callable Bond), 모기지증권 및 구조화된 모기지증권{분리이자(IO;Interest Only), Inverse IO, Floater, Inverse Floater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등
투자적격등급이하 채권위험	하이일드 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미평가 증권들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들로,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들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가격변동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유동성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채연계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DB 기업들의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로 전략적인 분산투자를 실시합니다. 부채연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퇴직부채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나 퇴직부채 변동을 모두 헤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부채 증가, 부채연계 포트폴리오의 자본손실에 대한 방어등을 위하여 국내외 주식, 채권등을 통하여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익추구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표준형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당사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고용시장, 산업구조, 금융시장상황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수익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운용하여

	표준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고유의 퇴직연금 부채에 대한 요구 및 상황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의 부채상황에 따라 적합한 운용전략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한 투자전략 중 하나는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부채를 관리하기에 적합하도록 퇴직부채에 연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퇴직부채에 연계하여 투자하더라도 나. 특수위험/표준형관련 위험, 퇴직연금부채연계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DB제도에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 수령액과 이 투자신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투자성과와 매우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의 투자전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해외투자용)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8.02%**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8.02%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8.02%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없음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5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

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이유	종류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	-	-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5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	0.3	0.024	0.015	0.639	0.01	0.649	-	0.879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3	0.15	0.024	0.015	0.489	0.01	0.499	-	0.729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0.3	0.1	0.024	0.015	0.439	0.01	0.449	-	0.679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0.3	-	0.024	0.015	0.339	0.01	0.349	-	0.579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71,240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수수료를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으로, 약 0.2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6	136	209	365	8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	184	283	494	1098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6	94	144	252	5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9	142	218	381	848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1	104	160	280	6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4	153	235	410	911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35	73	112	196	4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9	121	186	325	723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 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 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소득 및 일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7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및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 및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최초설정일로

	에의 투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위험평가액 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현금, 금융 기관에의 예치, 단기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제외)의 합계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9	수정듀레이션	투자신탁 재산의 수정듀레이션이 1.5년을 초과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단기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편입하고 있는 투자신탁 재산의 수정듀레이션을 1.5년 이내로 하여 채권에 투자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3M~3Y)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상기지수는 KIS채권종합지수의 종목 중 은행채(신용평가등급 AAA이상) 및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AA이상)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산금채 등으로 구성한 Customized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2. 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소득 및 일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7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1	지분증권인 주식등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음.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위험평가액 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현금, 금융 기관에의 예치, 단기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제외)의 합계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1년이상)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상기지수는 KIS채권종합지수의 종목 중 은행채(신용평가등급 AAA이상) 및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AA이상)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산금채 등으로 구성한 Customized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주식관련 사채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관련 사채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주식관련 사채 적용 제외)이어야 한다.)*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중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
1	후순위채권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9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과 합산하여 위험평가액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0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과 합산하여 위험평가액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파생결합증권	10% 이하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이 이자율환율인 것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4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	-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상기 "가.투자대상의 지분증권인 주식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기회 발생 시 일부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의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이 투자신탁의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정기예금금리+150bp] (50%) + KIS종합채권지수(50%)

<정기예금금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단순평균금리
<KIS종합채권지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효과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 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9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 중기 채권지수 (3M~5Y) * 95% + CD금리 * 5%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상기 지수는 KIS채권종합지수의 종목 중 당 펀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구성한 Customized 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5.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가. 피투자종목의 투자 필요성
전략배분형TDF 및 평생연금TIF가 배분하는 멀티인컴전략 내 하나의 하위펀드로써, 투자전략에 맞는 부동산/인프라 관련 수익증권,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하여 타 선별자산군 대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피투자종목의 선정 기준
장기적, 안정적 임대/이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우량 부동산/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피투자종목을 선별하여 투자종목의 잠재수익성, 각종 법률/규제 준수여부 및 투자 안정성 등을 사전검토 한 뒤, 당사 내부 부서(컴플라이언스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법무실)에 투자의견을 공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부승인이 이루어진 피투자종목에 한하여 투자 최종 의사결정을 집행하며 이후 자펀드의 AUM 변화, 투자 대상 운용 현황 및 성과, 투자 업종의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정합니다.

다. 펀드 실사
피투자종목에 대한 사전 실사는 상품제안서 및 투자설명서 등 상세 자료의 분석과 피투자종목 담당운용역과의 Q&A를 포함합니다. 투자 이후에도 운용보고서, 공시내역 및 담당 운용역과의 수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투자종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8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채권	2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2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2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1] (억원/백만불)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미국 애틀랜타 소재 스테이트팜 동부지역 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7-10	397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6호	미국 중부 Amazon 물류시설 포트폴리오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10-28	331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그린디지털인프라㈜ 후순위 대출금, 영산클린에너지(유) 후순위 대출금 등	맥쿼리자산운용	2002-12-12	54,789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	센터원, 미래에셋플레이스 등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01-09	5,734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MSCI US REIT Index Price Return을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한 투자신탁재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3-10-08	1,700
미래에셋맵스리츠	롯데아울렛 광교점, 강남KG타워, 마제스타시티 타워 1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12-12	627
ESR켄달스퀘어리츠	고양 물류센터, 부천 물류센터 등	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20-02-20	10,410
SK리츠	SK서린빌딩(SK그룹 통합사옥), 클린에너지리츠(SK에너지㈜ 주유소) 지분증권 등	에스케이리츠운용	2021-03-15	17,790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아마존 휴스턴 지분증권, 페덱스 탬파 지분증권 등	미래에셋자산운용	2021-05-21	1,008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롯데마트 이천점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4-19	195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	미래에셋맵스코어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스테이트타워남산)의 수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4-15	1,714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선순위대출 및 후순위대출	미래에셋자산운용	2018-06-29	480

1) 시총 기준

*운용 규모(억원): 순자산(리츠의 경우 자본금) 기준

본 펀드의 피투자종목 투자 편입 비중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동산 및 인프라펀드 비중은 펀드 순자산의 80%를 초과 투자
나. 동일펀드에 자산총액의 50% 이하 투자
다. 동일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지분율)의 50% 이하 투자
라. 동일운용사 펀드에 100% 이하 투자
마. 재간접펀드(펀드에 40% 초과하여 투자가능)에 투자 제한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까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나목만 해당)

		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0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KOSPI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20% 이내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일부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전략을 구사합니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합니다. 투자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대상 탐색
- 주요 대상: 우량 장기 임차인이 확보된 오피스, 물류창고 및 안정적인 이자 흐름이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자

산
- 오피스 자산의 기준: 해당 도시 내 주요 업무지역에 위치한 A급(Class A) 오피스 등 우량 자산
- 물류시설 자산의 기준: 주요 도시 인근에 위치한 우량 임차인의 장기 임차가 확보된 물류 시설
- 대출자산: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에 대한 선/후순위 대출
- 레버리지 제한: 레버리지 400% 이내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함

나. 투자대상 선정
- 투자제안서, 투자대상에 대한 각종 실사 및 감정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률 및 잠재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전략 상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편입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

다. 모니터링
투자 실행 후 정기보고서 수취, 운용역 및 관계자 인터뷰, 자산 점검 등을 통해 투자대상의 안정성 및 실적 점검, 리스크 관리 실행

④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도 일부 투자하여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국내	금융감독원	3.17%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여 임대수익과 자본이득 추구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6호	국내	금융감독원	0.27%	미국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투자해 안정적인 분배 지급 및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 추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국내	국토교통부	24.01%	유료도로, 교량, 터널, 항만,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자산의 시행(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동 법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를 통하여 수익 창출.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	국내	국토교통부	7.97%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국내	금융감독원	21.40%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추구
미래에셋맵스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1.75%	국내 주요 핵심 권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및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7.35%	물류센터 개발 및 운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
SK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7.34%	SK그룹 신용 기반 장기임대를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배당 중심 운용하며 점진적 자산 확대
미래에셋글로벌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4.81%	미국, 서부 유럽 주요 국가 등 핵심 지역 소재, 우수한 신용등급의 임차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및 오피스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국내	금융감독원	0.28%	롯데마트이천점에 투자하였으며 롯데쇼핑과의 책임임차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분배 지급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	국내	금융감독원	0.20%	서울 우량 오피스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분배 지급 및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 추구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국내	금융감독원	0.14%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시행법인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선/후순위 대출금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펀드 현금흐름을 창출함. 편입한 선순위 대출금리(4.3%)보다 저금리(3.7%)의 펀드차입금(684억원)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로 펀드 수익률 제고

*투자비중(%): 본건 펀드 순자산 대비 피투자펀드의 평가금액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 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종목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시내역 등 공개된 자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개요, 임대율, 잔여 임대차 기간, 운용 현황, 분배율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 운용사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6.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 및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CIO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의 자산배분전략을 토대로 운용되며, 국내외 우량 주식 및 채권 등의 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가격 상승 및 이자수익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10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10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10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10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위험평가액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위험평가액기준)10%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투자신탁재산의 최대 100% 까지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의 자산 배율 비율은 0 ~ 100%까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으로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해외법인의 CIO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를 통한 Top Down Approach에 의해, 자산 및 국가에 대해 적극적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월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산배분회의와 글로벌 퀀트- 베이스 회의를 통하여, 미래에셋 국내외 운용사의 Analyst / Portfolio manager 들의 지역별 / 섹터별 / 자산별 View 를 공유하고 잠정적인 투자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 Experience-based 리서치를 통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합니다.
- 안정적인 우량자산에의 장기투자와 수익률 추구방식의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인사이트펀드만의 독자적인 자산 배분 투자전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또는 지역 국가 및 섹터에 대하여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 적절한 벤치마크를 선정하기 어렵지만 성과 평가 및 비교 분석의 목적으로 MSCI AC World Index 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AC World Index 는 전세계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참조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93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675.0
	3.0	0.7	1.3	수입 (2024 년 , 십억 US$)	582.0
주요산업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0	0.1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해당 펀드의 투자 전략은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며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전망에 따라 지역별,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 비중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에 설정된 주식형 펀드와 상장 지수집합투자증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내부 선정프로세스에 따라 피투자 펀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유형별 피투자펀드를 대상으로 스코어링 모델을 통해 우수 펀드를 선별합니다.
-기본적인 피투자펀드 선정 기준
규모: 수익증권, ETF: AUM 100억 이상
운용 기간: 3년 이상 (단, 3년 미만의 경우라도 풀 확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
거래 용이성: ETF: 30일 거래량 10,000주 이상
-정량적 분석: 스코어링 모델을 활용해 위험조정성과, Hit Ratio, Peer 성과 등을 고려
-정성적 분석: 운용사의 운용 스타일, 최근 AUM 증감, 운용 펀드의 규약 조건 충족 여부,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운용 가이드라인 및 제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매니저 판단에 따른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다. 펀드 실사
피투자펀드들이 공모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인 만큼, 펀드 관련 정보들을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 혹은 Bloomberg를 통해 펀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지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	채권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7	금리스왑거래	보유 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퀄리티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종류 C-F	주식	Korea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2019-12-30	1,292
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자투자신탁H[주식]Cf	주식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2009-11-24	2,671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I	주식	Fidelity Investments Asset Management Ltd/Korea	2007-05-17	2,300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종류F	주식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2016-05-09	2,028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종류F	주식	Mirae Asset Management Co Ltd	2018-07-27	1,740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1호(주식)종류F	주식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2007-11-14	1,513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주식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2014-04-15	2,547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주식	Mirae Asset Management Co Ltd	2014-11-10	2,330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주식	Mirae Asset Management Co Ltd	2016-10-24	3,986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종류F	주식	Mirae Asset Management Co Ltd	2017-05-18	1,990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자투신탁자1호(주식)종류F	주식	AssetPlus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2014-05-21	1,338
Schroder EURO Equity	주식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2000-01-17	69
T.Rowe Price-US Large Cap Growth Equity (IUSD)	주식	T Rowe Price Luxembourg Management Sarl	2003-07-31	141
Schroder Emerging Asia (C)	주식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2004-01-09	73
SCHRODER INTL GL EQ ALP-C AC	주식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Europe SA	2005-07-29	530
FIDELITY FD-EUR DYN G-AE ACC	주식	FIL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rl	2006-09-25	32
UBS EQ GL EM OP USD-I A3 ACC	주식	UBS Asset Management Europe SA	2018-05-18	126
FIDELITY FUNDS-JP ADVANT-AAY	주식	FIL Investment Management Luxembourg Sarl	2009-09-18	4,993
AB - Select US Equity Portfolio S1 USD Acc	주식	AllianceBernstein Luxembourg SARL	2011-10-28	96
TIGER 미국S&P500(H)	주식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Fund Parent	2022-11-25	15,643
Invesco S&P 500 Momentum ETF	주식	Invesco Capital Management LLC	2015-10-09	121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50%, 예외 적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10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합니다.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 총수의 20% 이내에서 운용하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은 순자산의 10%이내로 하며 동일 집합 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이내로 하는 등의 법규 사항도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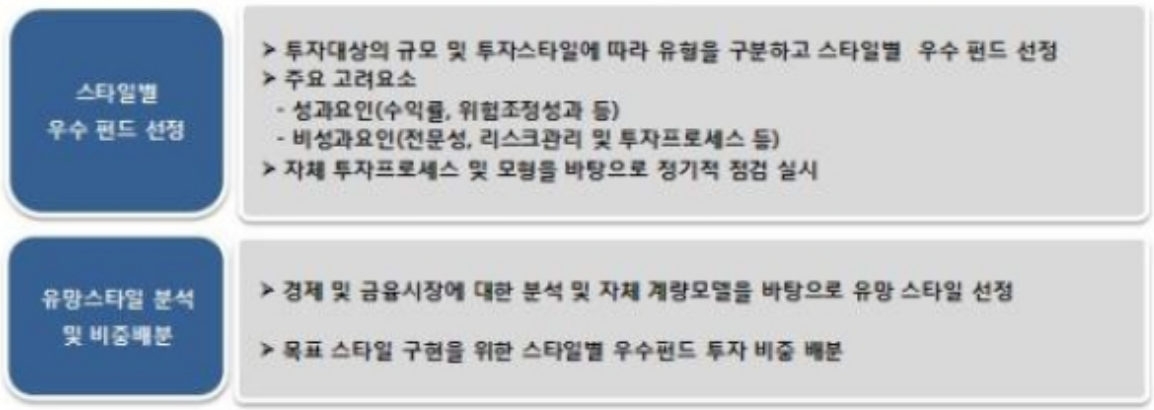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단,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합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 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퀄리티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종류 C-F	한국	-	7.49	웰링턴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퀄리티(높은 수익성·현금흐름·재무건전성)' 대형주에 집중, 환헤지(H).
삼성미국코어주식증권자투자신탁H[주식]Cf	한국	-	3.05	미국 대형주 '코어(성장+가치)'를 균형 있게 담는 액티브 전략, 환헤지(H).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I	한국	-	3.08	아시아 전역(신흥 포함)에서 하향식보다 종목 선택 중심(bottom-up)의 액티브 주식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종류F	한국	-	1.75	파생(TRS 등)을 활용해 베트남 핵심 업종에 분산 투자, USD 헤지(H-USD).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종류F	한국	-	0.4	베트남 고배당주와 IPO·신규상장 수혜주 비중 확대, 환헤지 없음(UH).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1호(주식)종류F	한국	-	1.24	BRICs(브라질·인도·중국 등) 대표 업종의 대형 우량주에 분산 투자.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한국	-	5.59	글로벌 구조적 성장기업(테크·소비·헬스케어 등) 중심의 액티브 그로스.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한국	-	2.99	중국 내수/신경제(인터넷, 소비, 헬스케어 등) 성장주 위주의 액티브 운용.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F	한국	-	1.16	인도 중소형 성장주에 집중, 고변동·고성장 베타 활용.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종류F	한국	-	4.53	파생을 활용해 MSCI ACWI 지수 수익률 추종, 환헤지(H).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자투신탁자1호(주식)종류F	한국	-	5.4	'좋은 기업과 오래 동행' 철학으로 글로벌 초우량 집중 보유(장기 가치/성장).
Schroder EURO Equity	룩셈부르크	CSSF	7.36	유로존 우량주에 집중하는 액티브 전략(기본 벤치마크)
T.Rowe Price-US Large Cap Growth Equity (IUSD)	룩셈부르크	CSSF	8.48	미국 대형 성장주 핵심 리더들에 집중, 하향식 리스크 관리+종목 발굴 병행.
Schroder Emerging Asia (C)	룩셈부르크	CSSF	4.08	신흥 아시아(중국/인도/동남아 등) 성장테마 중심의 액티브 주식형.
SCHRODER INTL GL EQ ALP-C AC	룩셈부르크	CSSF	9.37	전 세계 대형주에서 고품질 성장·지속가능 경쟁우위 기업을 선별해 알파 추구.
FIDELITY FD-EUR DYN G-AE ACC	룩셈부르크	CSSF	0.47	유럽(유로권 중심) 성장주 비중을 높인 액티브 전략, 종목 선택 중심.
UBS EQ GL EM OP USD-I A3 ACC	룩셈부르크	CSSF	3.44	신흥국 고 conviction 소수종목 집중 포트폴리오(바텀업 주도).
FIDELITY FUNDS-JP ADVANT-AAY	룩셈부르크	CSSF	4.66	일본 시장에서 구조적 개선·리레이팅 기대 종목을 바텀업으로 선별.
AB - Select US Equity Portfolio S1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6.55	미국 대형주 '베스트 아이디어' 집중의 코어 액티브(성장·가치 혼합).
TIGER 미국S&P500(H)	한국	-	12.06	S&P 500 지수 추종(선물/스와프 등) + 원화 환헤지(H)로 지수 노출에 집중.
Invesco S&P 500 Momentum ETF	미국	SEC	3.99	S&P 500 내 모멘텀 스코어 상위 종목을 지수 규칙에 따라 편입하는 팩터 ETF.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증권의 차입매도 한도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8.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해당 펀드의 투자 전략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배분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설정된 주식형 특히 퇴직연금펀드로 설정된 수익증권을 투자 유니버스로 하여 내부적인 선정프로세스에 따라 피투자 펀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액티브형 펀드 및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용 철학을 보유한 펀드인지, 중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인지
- 패시브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추종 지수의 구성 방법론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 공통적으로 추종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낮은지
-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총 보수가 낮은지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분석, 운용역과의 인터뷰 및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실사뿐 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투자 역량의 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운용사와의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 사후 실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주식관련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KB그로스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F클래스	주식	KB	2010-09-10	1,277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 C-F	주식	케이씨지아이	2024-11-08	15,204
NH-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f	주식	NH-아문디	2019-08-14	17,897
KODEX 200	주식	삼성	2002-10-14	196,894
KODEX 자동차	주식	삼성	2006-06-27	6,525
KODEX 증권	주식	삼성	2008-05-29	10,419
SOL AI반도체소부장	주식	신한	2023-04-24	9,147
TIGER 200	주식	미래에셋	2008-04-03	79,423
TIGER 2차전지테마	주식	미래에셋	2018-09-11	14,573
TIGER 반도체TOP10	주식	미래에셋	2021-08-09	69,994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주식	미래에셋	2023-10-16	9,932
TIGER 조선TOP10	주식	미래에셋	2024-10-21	10,775
TIGER 코리아TOP10	주식	미래에셋	2018-03-29	26,949
TIGER 코리아원자력	주식	미래에셋	2025-08-18	5,274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주식	미래에셋	2026-01-05	7,312
TIGER 코스닥150	주식	미래에셋	2015-11-11	22,940

※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50%, 예외 적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10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 총수의 20% 이내에서 운용하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은 순자산의 10%이내로 하며 동일 집합 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이내로 하는 등의 법규 사항도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약관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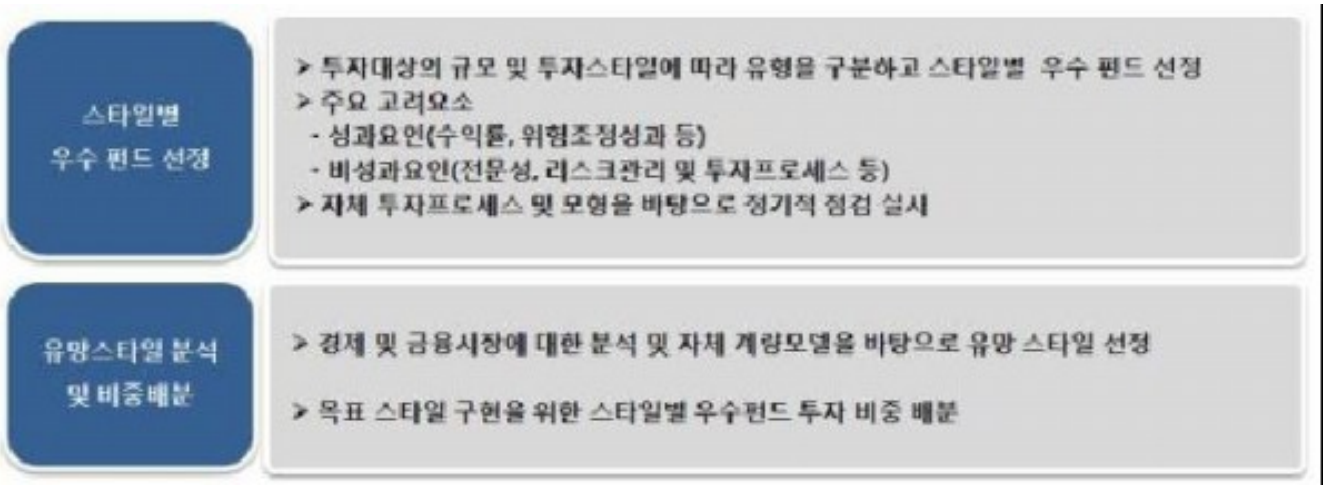
		③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요인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KB그로스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C-F클래스	한국	금융감독원	5.75	저평가 성장주 집중형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 C-F	한국	금융감독원	6.46	국내 대표 일등기업 장기보유형
NH-Amundi 필승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f	한국	금융감독원	9.99	한국 소부장/성장산업 집중형
KODEX 200	한국	금융감독원	0.99	국내 대형주 시장대표형
KODEX 자동차	한국	금융감독원	9.32	자동차 밸류체인 집중형
KODEX 증권	한국	금융감독원	8.79	증권업 경기민감형
SOL AI반도체소부장	한국	금융감독원	8.93	AI 반도체 소부장 집중형
TIGER 200	한국	금융감독원	0.49	국내 대형주 시장대표형
TIGER 2차전지테마	한국	금융감독원	3.86	2차전지 대표주 집중형
TIGER 반도체TOP10	한국	금융감독원	3.15	반도체 대형주+소부장 집중형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한국	금융감독원	0.82	은행 고배당 집중형
TIGER 조선TOP10	한국	금융감독원	0.09	조선 업황 모멘텀 집중형
TIGER 코리아TOP10	한국	금융감독원	2.74	한국 대표주 압축형
TIGER 코리아원자력	한국	금융감독원	6.07	원전 밸류체인 집중형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한국	금융감독원	13.46	휴머노이드/피지컬AI 집중형
TIGER 코스닥150	한국	금융감독원	0.1	코스닥 대표 성장주형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KOSPI (한국거래소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9.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6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 7~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위험평가액 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현금, 금융 기관에의 예치, 단기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제외)의 합계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KOSPI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수익을 추구하며, 일부 국내외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3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50%이하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3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	-

		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10	동일국가발행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국가에서 발행된 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Yield가 양호한 채권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 추구
▶배당수익률이 양호한 주식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의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추구
- 단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베타(β)의 일정수준에서 헤지수행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수익 추구
-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제한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 추구
- 고/저평가 상태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Commodity, 외환 등)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자산별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리츠 등의 경우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시장상황,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합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1.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주식 및 채권 등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추구하는, 보다 차별화된 투자 전략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 우수한 투자 역량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 포트폴리오 편입 시, 현행 포트폴리오 대비 수익성/안정성 등 개선 가능할지 등의 여부 판단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분석, 운용역과의 인터뷰 및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실사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투자 역량의 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운용사 및 자문사와의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 사후 실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 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종류F	미국 상장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6.02.09	2.4억원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종류F	미국 상장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6.02.09	1.4억원
Lumyna - HBK Diversified Strategies UCITS Fund (USD B Acc)	글로벌 주식·채권 및 파생상품	HBK Capital Management (HBK Europe Management LLP)	2023.10.31	948백만불
Fulcrum Diversified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글로벌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 멀티에셋	Fulcrum Asset Management LLP	2017.02.01	1,600백만불
Polar Capital Global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글로벌 전환사채·회사채·주식	Polar Capital LLP	2018.12.31	341백만불
GAM Swiss Re Cat Bond Fund (Inst USD Acc)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GAM London Ltd·SRILIAC (Swiss Re) 공동운용	2011.10.31	1,952백만불
BlackRock Strategic Funds - Systematic Asia Pacific Equity Absolute Return Fund (D2 USD)	아시아태평양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BlackRock (Luxembourg) S.A.	2017.02.22	1,968백만불
AQR Apex UCITS Fund (A1 USD Acc)	글로벌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 멀티에셋	AQR Capital Management, LLC	2017.02.01	2,505백만불
Man Dynamic Income (I USD Acc)	글로벌 국공채·회사채·유동화채권	GLG Partners LP(Man Group)	2022.06.30	8,717백만불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3) 투자 대상 펀드 중 역외펀드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기준(UCITS공모펀드 및 이에 준하는 공모펀드)에 따라 유동성 제약, 분산투자 규정, 투자국가 제한, 리스크 통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을 준수하는 펀드로 한정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 UCITS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 유럽연합(EU)의 공모펀드 기준으로 투자방법, 자본의 성격, 투자기관의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정. 이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 등록되면 타국가에 추가 등록하지 않고 다른 EU 국가에서도 판매 가능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종류F	대한민국	해당없음	0.27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미국주식 보유내역(SEC 13F)을 분석해 선별한 미국 상장주식에 모자형 구조로 투자, 환헤지 실시(H)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종류F	대한민국	해당없음	0.14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미국주식 보유내역(SEC 13F)을 분석해 선별한 미국 상장주식에 모자형 구조로 투자, 환헤지 미실시(UH)
Lumyna - HBK Diversified Strategies UCITS Fund (USD B Acc)	룩셈부르크	CSSF	17.29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에서 상대가치·차익거래 중심 멀티전략을 운용, 주요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절대수익 추구
Fulcrum Diversified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11.14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에 동적 자산배분·매크로·분산전략을 결합해 SOFR+3~5%의 절대수익 추구
Polar Capital Global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9.81	전환사채 매수-주식 공매도 구조의 전환사채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시장 국면과 무관한 절대수익 추구
GAM Swiss Re Cat Bond Fund (Inst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19.63	지진·태풍 등 재해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대재해채권(Cat Bond)에 글로벌 분산투자해 보험위험 프리미엄 수취
BlackRock Strategic Funds - Systematic Asia Pacific Equity Absolute Return Fund (D2 USD)	룩셈부르크	CSSF	13.49	아시아태평양(호주·일본 포함) 주식 대상 Systematic 시장중립 롱숏 운용으로 시장방향과 무관한 절대수익 추구
AQR Apex UCITS Fund (A1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10.22	매크로·주식 시장중립 롱숏·차익거래(M&A/CB 등) 서브전략에 분산투자하는 시스터매틱 멀티스트래티지
Man Dynamic Income (I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16.37	바텀업 크레딧 셀렉션 기반으로 글로벌 채권(국공채·회사채·유동화채권)에 투자해 인컴과 자본이득 추구

각 피투자 펀드에 최대 2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증권의 차입매도 한도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

	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2. 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파생상품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	-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에 40%이하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투자부분에 대하여 주로 활용할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을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④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70% + KOSPI×30%

< KIS국고채1~2년 :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전략에 따라서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3.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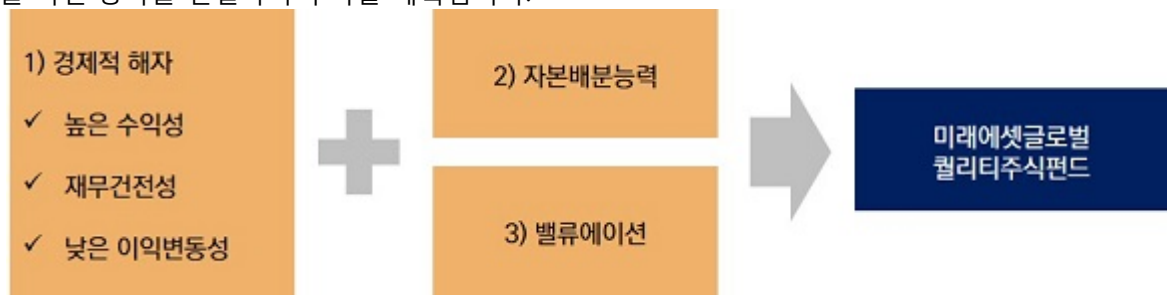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퀄리티(Quality) 주식에 투자합니다. MSCI의 정의에 따르면, 퀄리티(Quality) 주식이라 함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Debt to Equity)가 낮으며, 이익 변동성(Earnings Variability)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적은 자본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이 뛰어나며,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은 매크로 상황 등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② 퀄리티(Quality) 속성에 해당되는 주식들 가운데 경제적해자 및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적해자: 경제적해자란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우위를 가지는 기업으로 다음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합니다.
i)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당 제품의 가치도 커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른 사람의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을 향유할 만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ii) 무형자산: 특허, 라이선스 이외에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에 따른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iii) 전환비용: 높은 비용 발생으로 한번 구입한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
iv) 원가경쟁력: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영업이익률이 높은 구조를 가지는 기업
*자본배분능력: 기업의 잉여현금을 기존 사업에 재투자 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의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이익성장을 지속하거나,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기업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지 않는 기업
③ 투자 유니버스 및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까지의 투자프로세스 단계의 순서 및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델포트폴리오(MP) 후보군 구축 -> 스크리닝을 통한 종목 압축
2단계: 투자 종목 분석 -> 펀더멘털 분석 진행
3단계: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 철저한 밸류에이션을 통한 종목 선정 및 비중 결정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MSCI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대만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611.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35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32.0
	6.6	2.5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351.0
주요산업	전자기술, 정보통신, 석유정제, 화학, 섬유공업, 철강, 기계, 시멘트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및 관리]
해당 펀드는 글로벌 거래소 상장 종목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와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들에 투자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편입 종목에 대한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여 편입 당시 선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편입종목 교체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환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유동성으로 일부 원화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4.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국내 상장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호주 등 REITs를 포함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된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을 선별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에 투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2)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MSCI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된 국가에 상장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운용사의 운용 경험 3년 이상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이 USD 1억 이상

(3)펀드 실사
- 공시확인: 투자대상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요 사항의 경우 거래소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용보고서 확인: 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현황과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필요시 현지 운용사 및 REITs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별도 자료 요청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법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2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5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부동산・주식・채권・통화나 부동산・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7~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맵스미국11호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9-01	397
이리츠코크렙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18-06-27	3,107
맥쿼리인프라	인프라	맥쿼리자산운용	2006-03-15	54,789
맵스리얼티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04-09	6,350
신한알파리츠	부동산	신한리츠운용	2018-08-08	6,954
롯데리츠	부동산	롯데AMC	2019-10-30	14,015
제이알글로벌리츠	부동산	제이알투자운용	2020-08-07	3,713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20-08-31	4,463
미래에셋맵스리츠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05	627
ESR켄달스퀘어리츠	부동산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20-12-23	10,643
디앤디플랫폼리츠	부동산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021-08-27	2,793
SK리츠	부동산	SK리츠운용	2021-09-14	17,790
NH올원리츠	부동산	NH농협리츠운용	2021-11-18	1,755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부동산	신한리츠운용	2021-12-10	2,586
KB발해인프라	인프라	KB자산운용	2024-11-29	12,279
코람코더원리츠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22-03-28	3,676
KB스타리츠	부동산	KB자산운용	2022-10-06	3,418
삼성FN리츠	부동산	삼성SRA자산운용	2023-04-10	5,044
한화리츠	부동산	한화자산운용	2023-03-27	9,196
Crown Castle Inc	부동산	Crown Castle Inc	1998-08-17	39,046
Digital Realty Trust Inc	부동산	Digital Realty Trust Inc	2004-10-29	61,988
Equity Residential	부동산	Equity Residential	1993-08-11	23,865
Global Net Lease Inc	부동산	Global Net Lease Inc	2015-06-02	2,018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부동산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1992-08-06	14,267
Simon Property Group Inc	부동산	Simon Property Group Inc	1993-12-13	66,242
VICI Properties Inc	부동산	VICI Properties Inc	2018-02-01	32,287

※ 개별 피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은 최대 20%이며, 운용 전략상 순자산의 최소 50%, 최대 100%를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및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	-

		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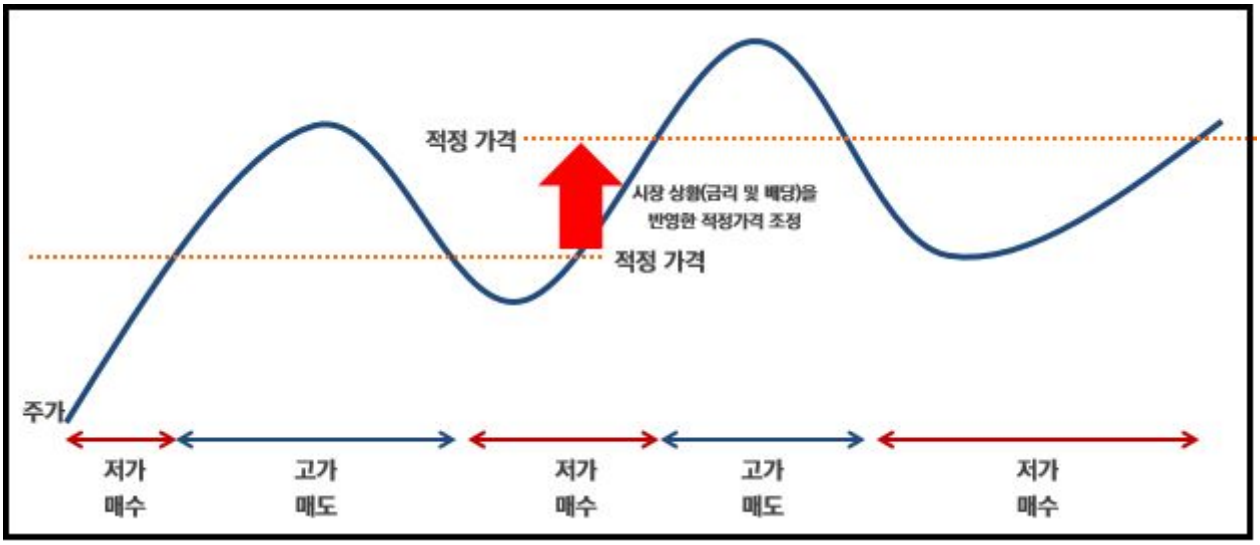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다.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변동성 매매 전략>
배당할인모형 등을 기반한 정량적평가와 리스크를 감안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 배당할인모형: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배당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모형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맵스미국11호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77	배당 전략
이리츠코크렙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2.16	배당 전략
맥쿼리인프라	한국	금융감독원	18.73	배당 전략
맵스리얼티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61	배당 전략
신한알파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50	배당 전략
롯데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4.82	배당 전략
제이알글로벌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94	배당 전략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05	배당 전략
미래에셋맵스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69	배당 전략
ESR켄달스퀘어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9.55	배당 전략
디앤디플랫폼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2.35	배당 전략
SK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7.88	배당 전략
NH올원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36	배당 전략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15	배당 전략
KB발해인프라	한국	금융감독원	2.32	배당 전략
코람코더원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03	배당 전략
KB스타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01	배당 전략
삼성FN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83	배당 전략
한화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9.05	배당 전략
Crown Castle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3	배당 전략
Digital Realty Trust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5	배당 전략
Equity Residential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2	배당 전략
Global Net Lease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0	배당 전략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1	배당 전략
Simon Property Group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6	배당 전략
VICI Properties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1	배당 전략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13.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5,20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35.0
	2.6	1.4	2.0	수입 (2024 년 , 십억 US$)	758.0
주요산업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싱가포르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54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0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78.0
	4.1	1.8	4.4	수입 (2024 년 , 십억 US$)	786.0
주요산업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2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투자펀드의 운용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 구성 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

고, 이를 피투자펀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3기(23.05.17 ~ 24.05.16)	적정
4기(24.05.17 ~ 25.05.16)	적정
5기(25.05.17 ~ 26.05.16)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5기(26.05.16)	4기(25.05.16)	3기(24.05.16)
운용자산	105,770	42,469	46,513
증권	105,682	42,140	46,394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88	129	119
기타운용자산	-	200	-
기타자산	377	35	7
자산총계	106,148	42,505	46,520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2,278	2,487	58
부채총계	2,278	2,487	58
원본	84,311	39,613	46,695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19,559	404	-233
자본총계	103,870	40,017	46,461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5기(25.05.17 ~ 26.05.16)	4기(24.05.17 ~ 25.05.16)	3기(23.05.17 ~ 24.05.16)
운용수익	15,526	3,398	3,575
이자수익	6	8	5
배당수익	2,233	1,574	611
매매/평가차익(손)	13,286	1,815	2,958
기타수익	-	-	-
운용비용	318	220	233
관련회사보수	316	218	231
매매수수료	1	1	1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5,208	3,177	3,342
매매회전율	120	42	42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5기(26.05.16)	4기(25.05.16)	3기(24.05.16)
운용자산	105,770	42,469	46,513
증권	105,682	42,140	46,394
주식	-	-	-
ETF	-	-	-
채권	-	-	-
매입어음	-	-	-
수익증권	105,682	42,140	46,394
외화유가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파생상품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ELS	-	-	-
ELW	-	-	-
DLS	-	-	-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	-
현금 및 예치금	88	129	119
예금	88	129	119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	-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	200	-
콜론	-	200	-
환매조건부채권	-	-	-
기타자산	377	35	7
미수이자	-	-	-
미수배당금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377	35	7
선물정산미수입금	-	-	-
선납(선급)원천세	-	-	-
기타	-	-	-
자산총계	106,148	42,505	46,520
운용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	-
미지급주식	-	-	-
미지급채권	-	-	-
미지급ETF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기타부채	2,278	2,487	58
미지급보수	113	49	52
미지급해지금	672	146	-
미지급이익분배금	1,491	2,290	5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	-	-
부채총계	2,278	2,487	58
원본	84,311	39,613	46,695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19,559	404	-233
당기순이익	-	-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103,870	40,017	46,461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5기(25.05.17 ~ 26.05.16)	4기(24.05.17 ~ 25.05.16)	3기(23.05.17 ~ 24.05.16)
운용수익	15,526	3,398	3,575
투자수익	2,239	1,582	617
이자수익	6	8	5
배당수익	2,233	1,574	611
기타수익	-	-	-
매매이익	15,570	2,427	3,618
주식매매이익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15,570	2,427	3,618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2,283	611	659
주식매매손실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2,283	611	659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318	220	233
위탁보수비	190	137	146
판매보수비	100	62	65
수탁보수비	15	11	11
사무관리보수비	9	6	7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1	1	1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5,208	3,177	3,342
비용	2,602	831	892
수익	17,810	4,009	4,235
천좌당 순이익(원)	263	71	6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5.17~'24.05.16	9,693	9,049	-	-	2,959	2,843	6,733	6,205	-
'24.05.17~'25.05.16	6,733	6,727	1,641	1,685	1,027	1,086	7,348	7,326	-
'25.05.17~'26.05.16	7,348	7,496	16,477	18,869	1,041	1,233	22,784	25,132	36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5.17~'24.05.16	206	193	262	252	131	125	337	319	-
'24.05.17~'25.05.16	337	337	9,385	9,835	2,108	2,208	7,613	7,963	1
'25.05.17~'26.05.16	7,613	7,707	39,066	43,856	11,056	12,593	35,623	38,970	454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5.17~'24.05.16	44,522	41,280	-	-	5,097	4,872	39,424	36,408	-
'24.05.17~'25.05.16	39,424	39,196	-	-	14,977	15,560	24,447	23,636	-
'25.05.17~'26.05.16	24,447	24,603	1,456	1,465	-	-	25,903	26,069	1,465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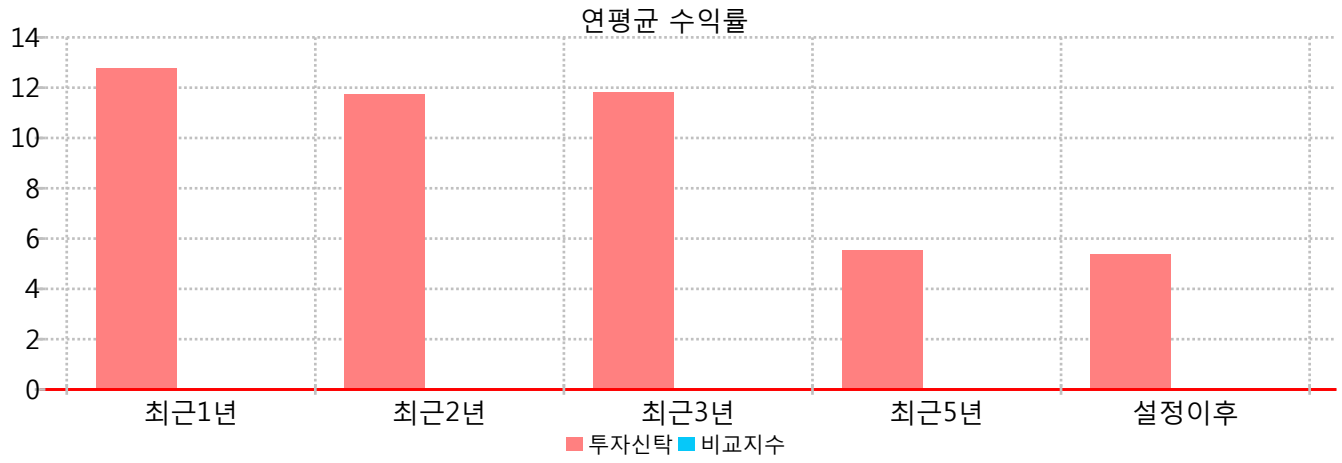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5.17~'24.05.16	200	190	-	-	-	-	200	190	-
'24.05.17~'25.05.16	200	200	4	4	-	-	204	204	4
'25.05.17~'26.05.16	204	210	8	27	212	237	-	-	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1.10.01~ 26.09.30	설정일~ 26.09.3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2.09	11.06	11.11	4.88	4.57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2.26	11.22	11.28	5.04	4.70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12.32	11.28	11.33	-	5.00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	-	-	-
투자신탁	12.80	11.76	11.81	5.54	5.39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9.59	7.24	6.36	5.85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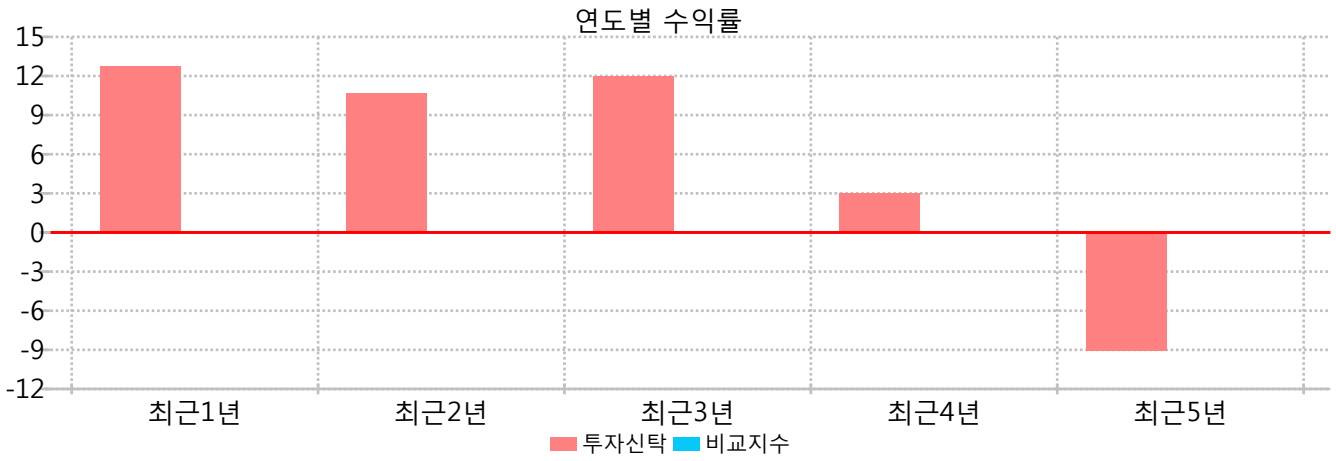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5.09.30	23.10.01~ 24.09.30	22.10.01~ 23.09.30	21.10.01~ 22.09.3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2.09	10.03	11.26	2.36	-9.65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2.26	10.19	11.42	2.51	-9.50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12.32	10.24	11.48	2.56	-12.59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10.35	11.59	2.66	-9.37
투자신탁	12.80	10.72	11.96	3.01	-9.06
비교지수	-	-	-	-	-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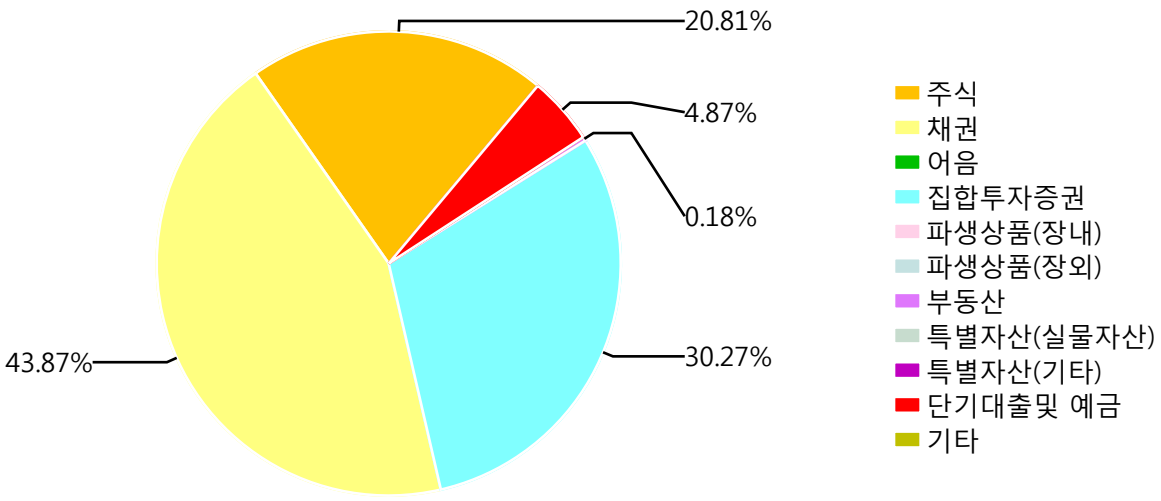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6.09.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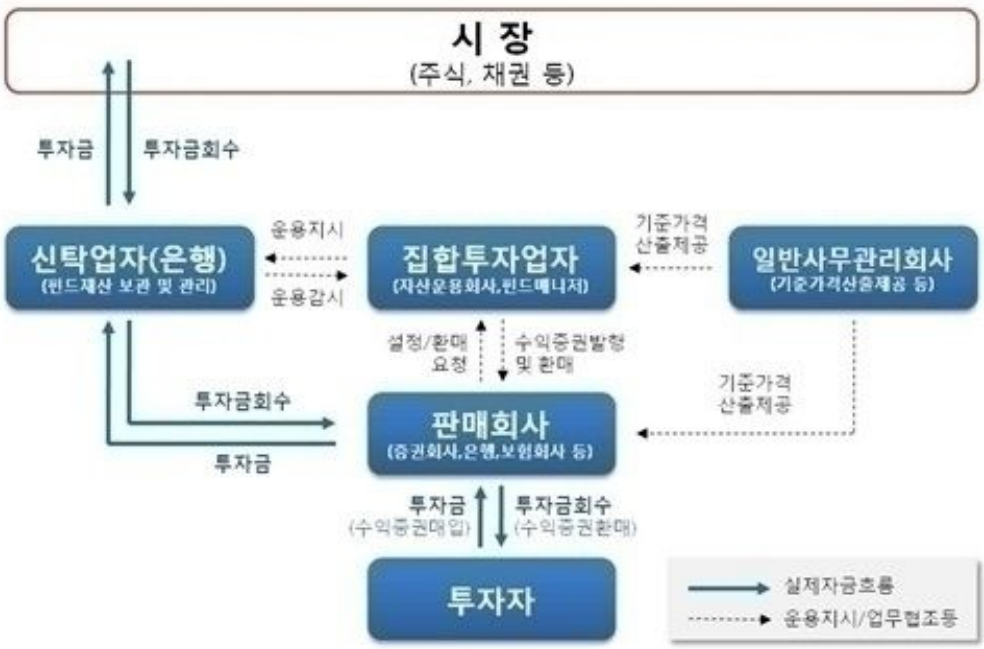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AUD(호주)	-	423	-	-	-	-	10	-	-	-	-	433
	-	0.35	-	-	-	-	0.01	-	-	-	-	0.36
BRL(브라질)	-	383	-	-	-	-	-	-	-	-	-	382
	-	0.31	-	-	-	-	-	-	-	-	-	0.31
CAD(캐나다)	-	-	-	-	-	-	8	-	-	-	-	7
	-	-	-	-	-	-	0.01	-	-	-	-	0.01
CNH(CNH(유가증권))	107	-	-	-	-	-	-	-	-	-	-	107
	0.09	-	-	-	-	-	-	-	-	-	-	0.09
COP(콜롬비아)	-	28	-	-	-	-	-	-	-	-	-	27
	-	0.02	-	-	-	-	-	-	-	-	-	0.02
EUR(유럽연합)	269	-	-	342	-	-	4	-	-	4	-	619
	0.22	-	-	0.28	-	-	-	-	-	-	-	0.51
GBP(영국)	256	-	-	-	-	-	5	-	-	-	-	261
	0.21	-	-	-	-	-	-	-	-	-	-	0.21

HKD(홍콩)	177	-	-	-	-	-	-	-	-	-	-	176
	0.15	-	-	-	-	-	-	-	-	-	-	0.15
INR(인디아)	-	-	-	-	-	-	-	-	-	-	-	-
	-	-	-	-	-	-	-	-	-	-	-	-
JPY(일본)	510	-	-	-	-	-	16	-	-	-	-	525
	0.42	-	-	-	-	-	0.01	-	-	-	-	0.43
KRW(한국)	12,545	42,408	-	28,421	-	-	-	-	-	4,506	-	87,880
	10.3	34.82	-	23.34	-	-	-	-	-	3.7	-	72.16
KZT(카자흐스탄)	-	409	-	-	-	-	-	-	-	-	-	409
	-	0.34	-	-	-	-	-	-	-	-	-	0.34
MXN(멕시코)	-	32	-	-	-	-	-	-	-	-	-	32
	-	0.03	-	-	-	-	-	-	-	-	-	0.03
NGN(나이지리아)	-	63	-	-	-	-	-	-	-	-	-	63
	-	0.05	-	-	-	-	-	-	-	-	-	0.05
SGD(싱가포르)	-	-	-	-	-	-	16	-	-	-	-	16
	-	-	-	-	-	-	0.01	-	-	-	-	0.01
USD(미국)	11,472	9,643	-	8,096	-	-	176	-	-	1,423	-	30,810
	9.42	7.92	-	6.65	-	-	0.14	-	-	1.17	-	25.3
ZAR(남아프리카공화국)	-	35	-	-	-	-	-	-	-	-	-	34
	-	0.03	-	-	-	-	-	-	-	-	-	0.03
합계	25,336	53,424	-	36,859	-	-	235	-	-	5,933	-	121,781
	20.81	43.87	-	30.27	-	-	0.18	-	-	4.87	-	100.01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4조 5,944억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5.12.31	2024.12.31	항 목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2,510	92,708	영업수익	608,922	423,32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66,491	123,681	영업비용	328,796	282,107
유가증권	5,275,015	4,647,770	영업이익	280,126	141,22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1,379	66,887	지분법손익	591,743	385,105
기타자산	6,545	6,560	영업외수익	1,365	10,250
자산총계	5,741,941	4,937,606	영업외비용	2,744	2,916
예수부채	41,650	20,201	법인세차감전이익	870,489	533,661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529,380	619,314	당기순이익	713,047	450,732
기타부채	576,498	423,101			
부채총합	1,147,528	1,062,61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384,177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25,339	80,811			
이익잉여금	4,167,714	3,479,685			
자본총계	4,594,413	3,874,99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147,594	6,412	6,793	46,851	207,650	8,504	25,485	11,518	62,638	12,592	13,887	817	-	343,0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02-2073-7114
홈페이지	www.kbstar.com
연혁	1963년 2월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홈페이지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